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9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박희승·김정호·김준혁

김한규 · 최기상 · 임광현

서영교 · 강유정 · 박홍배

김윤덕 • 정진욱 • 어기구

윤준병 · 김남희 · 남인순

박민규 • 한민수 • 민병덕

소병훈 · 정준호 · 이광희

의원(2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BMI)가 25kg/m²이상인 사람의 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13년 3 1.8% → '22년 37.2%), 특히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7.7%에 달하여 2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하는 등 비만인구가 크게 늘고 있음.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주요 질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당뇨병 2.6배, 심근경색 1.2배, 허혈성 뇌졸중 1.1배 등), 삶의질이 낮거나 우울증, 사회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하기 때문에 비만을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소아ㆍ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남아 약 2.5배(10.4% →

25.9%), 여아 약 1.4배(8.8% → 12.3%) 증가하였는데, 소아 비만아의경우 고지혈증, 지방간 등에 일찍 노출되고, 고도 비만아는 78% 이상이 합병증을 가지며 절반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등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1년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가장 눈에 띄지만 가장 무시되는 심각한 보건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전반적인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비만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둒(안 제9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비만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15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
- 사.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예방 및 관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안 제19조).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만"이란 사람의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 ex), 허리둘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여 국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만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비만예방 및 관리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비만 실태조사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4. 소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비만예방 및 관리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6.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비만예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비만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연도별 비만예방관

- 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비만예방 및 관리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만예방관리위원회)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예방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3.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2.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그 밖에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 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제1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비만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

- 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만현황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양, 식생활,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연구 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비만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 2. 비만으로 인한 질병 및 치료방안에 관한 사항
 - 3. 의료비, 재정 등 비만과 경제적 비용의 관계에 관한 사항
 - 4. 소득수준, 연령, 성별 등 사회적 요소와 비만의 관계에 관한 사항
 - 5. 비만관련 인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해외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연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연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비만예방 및 관리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9조(비만예방의 날) ①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예방 및 관리를 중시하는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